예정지에도 駐車場이나 駐車빌딩 같은 駐車施設이 가능하도록 追加함으로써 交通難, 駐車難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이 가설 건축물 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垈地안의 造景에 관한 사항은 항만시설 보호지구 안에서도 창고시설을 하면서도 그 옆에다 造景을 一般 建築物과 같이 꼭 해야 되느냐 이것은 수없이 民願에도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造景施設을 완화하는 범위로 條例로서 완화시키려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미술 장식품 設置는 建築物의 규모 以上의 建築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미술 장식품을 設置하도록 條例로 制定하고 있는데 이 條例에서 설치 의무 규모는 제정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細部的인 運營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그 점을 施行過程에서 발견하고 그런 점을 보완 改正하도록 하며 또한 建築線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이것은 條例를 만들어서 施行을 하다 보니까 施行過程에 文案의 충분하지 못한 표현들로 인해서 상당히 民願이 애매모호한 적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전부 補完해서 지금 油印物로 배부해 드린 現行과 改正案 대비표에 표시되어 있는 事項으로 전부 改正하고자 하는 事項입니다.

이상입니다.

(參　照)

釜山直轄市沙下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

(끝에 실음)

○委員長 崔靈斗　李學雨 建築課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趙元濟　釜山直轄市沙下區建築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　照)

부산직할시사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조례(안) 현황

   ○ 본 조례 근거법령은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 본 조례는 '93. 4. 29 제264호로 제정되었음.

2. 조례개정 검토사항

현　　　행	개　정　안	검　토　내　용
제6조(회의) 제3항 1. 너비 25m이상 도로 및 간선도로(도시고속도로는 제외)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다만 공장과 주거전용의 건물은 제외)	제6조 제3항 1. ……………………………… ……(계획도로 포함……) ……………………………… ……………………………… …………(다만…가설 건축물 공작물 제외)	○구건축위원회의 건축물 허가대상에서 간선도로는 너비 25m이상 도로에 포함되므로 삭제, 가설 건축물, 공작물은 민원 불편해소 차원에서 제외(구자체 개정)

현 행	개 정 안	검 토 내 용
	9.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신설)	○식품 영업허가 제한 기준 개정고시('93. 7. 20)에 의거 주거지역에 단란주점 허가를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과 기타 건축행정 관련사항 규제
제15조(가설 건축물)	제15조 제1항 4. 영 제118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신설)	○도시계획시설 및 예정지에도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시설 설치허용(시·구협의 개정)
제18조(대지안의 조경)	제18조 제2항 5. 항만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중 창고시설(컨테이너 보세장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운수시설(신설)	○개정(안) 해당시설 이용 제고를 위한 자체 조경 면제 완화(시·구협의 개정)
제21조(미술장식품의 설치)	제21조 제3항 미술장식품 권장시기, 설치방법, 심의절차, 심의기준 및 세부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미술장식품의 설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칙 재정 근거 마련(구자체 개정)
제48조(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야 한다.	제48조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으로부터 다음표에서 …………………………… ………………………………	○범위를 정하기 위한 자구수정(시·구협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검 토 내 용
△다음표 : 총포 판매소 제외	△다음표 : 총포 판매소 제외 (삭제)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13호〔별표 1〕19호 나목 삭제 4호 나목 11신설 개정되어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변경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표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야 한다.	2.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으로부터 다음표에서 …………………………… ……………………………………	○범위를 정하기 위한 자구수정(시·구협의 개정)
4. 아파트의 경우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3㎡이상 띄워야 한다.	4. 아파트 경우 주거부분에 대하여는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단, 부대시설의 경우 제1호－제3호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아파트시설 중 주거시설을 한정하고 다른 부대시설은 1－3호에 의거 이격 규정 적용(시·구협의 개정)
제49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 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건축을 각 부분까지 다음 각호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제49조 ① ………인접대지 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 도로, 하천, 광장, 공공용지, 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부터………신설	○대지 이용 제고 위한 개정(시·구 협의)

현 행	개 정 안	검 토 내 용
1. 2호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의 경우 다음표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워야 한다. 1호 도표 용도란 중 △다음표 : 총포 판매소 제외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0.5m이상 띄워야 한다.	1. …………………………… …………200㎡이상의 경우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으로부터 다음표에 ………………………… ………………………… △다음표 : 총포 판매소 삭제 4. …………………………… (단, 법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범위 정하기 위한 자구수정 (시 · 구협의 개정) ○건축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서 근린생활 시설로 개정 ○건축법 제6조 규정에 의해 건축할 경우 인근 대지 경계 이격거리 적용하여 동법 취지에 적합하게 개정 (시 · 구협의 개정)
제23조 제2호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 〔별표 4〕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를 제외 한다)	〔별표 4〕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 주점은 구청장이 공고하는 구역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3호〔별표 1〕 4호 나목 11 단란주점 가능토록 시설 개정 되어 있음.

현 행	개 정 안	검 토 내 용
마. 업무시설(B=12m이상인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이하인 것에 한한다)	마. 업무시설(………………………………접한 대지의 경우로써…………)	○해석상 차이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구자체 개정)
제23조 10호 〔별표 12〕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	제23조 10호 〔별표 12〕 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나. 근린생활 시설(신설) (단란주점에 한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0호〔별표 11〕 2호 가, 나 단란주점 가능토록 신설
제23조 11호 관련 〔별표 13〕 보전 녹지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상 동 나. 근린생활 시설 (……………)	제23조 제11호 〔별표 13〕 나.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	 ○상 동 제11호 〔별표 12〕 2호 나. 단란주점 금지 신설

현 행	개 정 안	검 토 내 용
제23조 12호 〔별표 14〕 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제한 1. 상 동 다. 근린생활 시설 자. 자동차 관련신설	〔별표 14〕 다. 근린생활 시설(단란주점 제외…………) 자. 자동차 관련신설(………자동차 운수사업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상 동 제12호〔별표 13〕2호 다. 단란주점 금지신설 ○상 동 제12호〔별표 13〕2호 자. 운수사업체 차고설치 신설 가능
제23호 제13호 〔별표 15〕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1. 상 동 나. 근린생활시설 (……………) 다. 공장(아파트,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23조 제13호 〔별표 15〕 1. 상 동 나.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제외……) 다. 공장(아파트,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에 한한다.)	 ○상 동 제13호〔별표 14〕2호 라목 단란주점 금지신설 ○상 동 제13호〔별표 14〕2호 자목 첨단산업 공장은 읍, 면지역에 한해 설치 가능한 것을 조례 제정시에 잘못 적용으로 삭제 개정